

#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12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기존 수익창출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'15. 05. 법률자문결과 현행의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경기침체 및 재활용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
- 나. 예산지원형으로 위탁유형을 변경하고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안정적인 유지·관리를 담당할 위탁운영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폐기물관리법 제5조(폐기물의 광역 처리)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  - 예산지원형으로 전환 필요성
    - 수익창출형의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존재('15. 05. 법률자문결과)
    -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형 전환 필요
    -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활용시장 악화로 재정적자 가속화

## 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·운반에 관한 사항
- 수거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새로운 수거체계 확보 및 구축에 관한 사항
-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
-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확대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그 밖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위탁업체의 업무로 결정된 사항 등

## 라. 시설개요 현황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(송정동 73-36)
- 시설규모 : 처리능력 3,600톤/년, 부지면적 2,257.5 $m^2$ , 건축면적 809.95 $m^2$
- 주요업무 : 폐중소형 가전제품, 폐휴대폰 및 폐사무기기 등 자원화

〈시설 위치도〉



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3년(2018. 4. 1. ~ 2021. 3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계약 방법 :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
- 참여 조건 : 제한경쟁
  - 처리량 1200톤/년 이상 도시금속회수센터 또는 선별장, 그 외 유사시설 운영실적 보유
  -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자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총 위탁비용 : 9,288백만 원

| 구분         | 운영원가      | 비고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
| 총 위탁비용     | 9,288백만 원 | 물가상승률 반영 |
| 2018년 위탁비용 | 3,005백만 원 | -        |
| 2019년 위탁비용 | 3,095백만 원 | 3% 인상 적용 |
| 2020년 위탁비용 | 3,188백만 원 | 3% 인상 적용 |

○ 2018년 운영원가 산출근거

- 운영인력 산정 : 일평균 처리량을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산정하는 물량계산기준 사용
- ※ 2018년 추정수거량 ÷ 근무일수 ÷ 1일 일평균 처리량 = 인원 (단위 : 명)

| 구분                 | 직인원     | 비고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경영<br>지원팀          | 센터장   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기획실장  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영업 부장 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생산 부장 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데이터관리 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홍보 및 교육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총무/경리   | 1         |
| <b>경영지원팀 인원 소계</b> |         | <b>7</b>  |
| 외부<br>선별반          | 외부선별반장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외부선별원   | 9         |
| <b>외부선별반 인원 소계</b> |         | <b>10</b> |
| 생산<br>지원반          | 생산지원반장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압축기조직원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절단기조직원  | 1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내부선별원   | 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구리작업원   | 1         |
| <b>생산지원반 인원 소계</b> |         | <b>6</b>  |
| 생산반                | 생산반장    | 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분해생산원   | 29        |
| <b>생산반 인원 소계</b>   |         | <b>31</b> |
| 수송반                | 대형수송원   | 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소형수송원   | 2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게차     | 2         |
| <b>수송반 인원 소계</b>   |         | <b>6</b>  |
| <b>합계</b>          |         | <b>60</b> |

○ 운영원가 산정

| 구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제조, 생활임금<br>혼용기준원가 | 비고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비<br>정<br>산<br>비 | 인<br>건<br>비   | 직접노무비              | 1,910,466,984        | 처리물량 등 반영 60명으로 산정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간접노무비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<b>인건비 소계</b>      | <b>1,910,466,984</b>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경<br>비        | 인적보험료              | 204,039,888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복리후생비              | 134,928,448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안전점검비              | 8,235,60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차량유지비              | 47,335,508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통신비                | 2,472,96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여비교통비              | 1,280,00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소모품비               | 14,093,147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도서인쇄비              | 100,000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안전관리비              | 11,270,347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지급수수료              | 2,013,60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<b>경비소계</b>        | <b>425,769,498</b>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<b>비정산비소계</b> |                    | <b>2,336,236,482</b> |        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정<br>산<br>비   | 경<br>비             | 전력비                  | 17,193,216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  | 94,166,640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용수비                  | 680,539  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수리수선비                | 28,467,326         |  |
| 연료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1,430,909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건물보험료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4,562,319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경비소계</b>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<b>146,500,949</b>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<b>정산비소계</b>     |               | <b>146,500,949</b>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순원가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,482,737,431      | 비정산비+정산비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일반관리비(5.4%)      |               | 126,156,770        | 비정산비x5.4%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이윤(5%)           |               | 123,119,663        | (비정산비+일반관리비)x5%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총괄원가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2,732,013,863      | (순원가+일반관리비+이윤)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부가가치세(10%)       |               | 273,201,386        | 총괄원가x10%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| 합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3,005,215,249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|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원안가결

자.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

-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에 따라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불식
-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등 근로여건 개선 가능
-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자원순환기능 강화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폐기물관리법 제5조

제5조(폐기물의 광역 관리) ①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(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)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#### 나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##### ○ 인센티브 및 페널티 방안 마련을 통한 성과평가 실시

- 적용구간을 8구간으로 설정하여 95%~105% 구간을 기준 설정
- 인센티브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페널티는 이윤의 비율을 차등 부여

| 목표 달성률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125% 이상           | 초과달성 수익금의 15% 지급 |  |
| 115% 이상 ~ 125% 미만 | 초과달성 수익금의 10% 지급 |  |
| 105% 이상 ~ 115% 미만 | 초과달성 수익금의 5% 지급  |  |
| 95% 이상 ~ 105% 미만  | -                |  |
| 85% 이상 ~ 95% 미만   | 낙찰이윤률 대비 90% 지급  |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및 인정 시 페널티 미부여 |
| 75% 이상 ~ 85% 미만   | 낙찰이윤률 대비 80% 지급  |  |
| 70% 이상 ~ 75% 미만   | 낙찰이윤률 대비 70% 지급  |  |
| 70% 미만            | 차기 입찰 참가 제한      |  |

※ 작성자 :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 윤인석 (☎ 2133-3690)